규제영향분석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목 차>

1.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성자	이름	전진경
	담당부서(과)	학생건강정책과		직급	교육연구사
	국장	심민철		연락처	0442036541
	과장	김새봄		이메일	nada13@korea.kr

2026. 07. 16.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심민철 (서 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2조의 2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2</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학교급식법 제15조의 2</td></tr>
<tr><td>4.유형</td><td>신설</td><td>5.입법예고</td><td>2026.07.24~2026.07.29</td></tr>
<tr><td>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민권익위 권고(’10.6월)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체결 시 위생불량 급식업체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필요
※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12.2월) : 학교급식조달시스템 이용 학교에 불량 식재료가 유통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으므로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성 제고 대책 강구

○ 이에, 행정안전부, 시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미 2014년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원에서는 입찰참가제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 마련 방안을 강구* 요구

※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업체(’25년) : 65여 개 업체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19년) : 교육부장관은 국공립 학교의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강구

○ 이와 관련, 2026. 2. 19. 법률 제21354호로 「학교급식법」 개정되며 입찰참가제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학교의 장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과 기간, 그 밖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필요</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td><td></td><td>※ 정부입법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21대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 학교급식에 유해 식재료의 납품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보다 철저한 식재료 관리를 통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사용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조치 필요</td></tr>
<tr><td>7.규제내용</td><td>○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에 대하여 형벌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6개월의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 업체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중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학교급식 관련 업체에 한정하여 1개월~6개월 제한
※ 기 국무조종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반영(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제한기한을 타 법률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을 개선권고, ’22.11.17.)</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피규제집단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
○ 이해관계자 : 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td><td>40여 개 업체(‘25년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업체 중 중요한 위반행위 급식업체 기준 추정)</td></tr><tr><td>이해관계자</td><td>학교, 학생 및 학부모</td><td>학교 약 15천여 개교(초중고특수, 국공립 및 50인 이상 사립유치원), 학생 약 5,541천명, 학부모</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학교급식에 유해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줄이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보다 철저한 식재료 관리뿐만 아니라,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사용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td></tr>
<tr><td>규제의 적정성</td><td>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td><td></td><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
</table>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비용)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것이므로 규정 준수를 전제로 분석하는 경우 별도 비용 없음 ○ (편익)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수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7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2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은 「식품위생법」 제75조·제7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학교의 장은 법 1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표 2]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적용기준(제12조의2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기간
1.「식품위생법」제4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2개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개월	
	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개월	
	라.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4개월	
	마.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4개월	
	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ㆍ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4개월	
	2.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가.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4개월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	2개월	

	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다.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3.「식품위생법」제8조를 위반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개월	
	4.「식품위생법」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2개월	
	5.「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4개월	
	6.「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	2개월	

	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판매하지 않을 것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지 않을 것,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할 것,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2개월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검사기간	2개월	

	내에 받을 것 1) 일부항목 검사: 1년(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받을 것. 다만,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7.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6개월	

		가. 식중독균ㆍ엔테로박터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	4개월(식육포장처리업은 2개월)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2개월
		다.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2개월
		라.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하는 경우	4개월
		마.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정하지 않은 축산물을 제조ㆍ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2개월
		바.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사.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아.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	2개월

	반한 경우		
	차. 곰팡이 독소 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타.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중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2개월	
	파.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4개월	
	하. 식품첨가물의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2개월	
	거. 가목 및 나목, 마목부터 하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품목 제조 보고한 성분배합비율을 1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	2개월	
	너. 기생충 또는 그 알, 금속, 유리가 혼입된 경우	1개월	
	더. 칼날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의 사체가 혼입된 경우	2개월	
	러. 축산물 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원료의 구비		

	요건이나 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거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1)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사료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수집·처리·가공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2개월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거하지 않아 원료로 혼입된 경우	2개월	
	3)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4개월	
	4)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2개월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	2개월	

	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로 확인되거나 통보된 후에도 그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버.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2개월	
	9.「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개월	
	10.「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항목의 전부 또는 50퍼센트 이상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2개월	
	11.「축산물 위생관리법」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불합격품을 판매한 경우	2개월	
	12.「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ㆍ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ㆍ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4개월	
	13.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2개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받을 것.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다만, 모든 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함.		

	2) 모든 항목 검사: 3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		
	나.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	2개월	
	14.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ㆍ처리ㆍ집유ㆍ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	2개월	

	라 검사를 받을 것 나.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소비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소비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전자문서로 하는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 전환을 실시하고, 냉동 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 냉동 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할 것 3) 신고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4)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지 않을 것	2개월	

	다.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지 않을 것	2개월	
	15.「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16.「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한 경우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4개월)	
	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정한 동물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 중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정한 것 외의 것을 포함한다]	2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4개월)	
	다.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고 수	4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6개월)	

	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라. 축산물검사에 합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	2개월
	마.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4개월 (식육포장처리업은 6개월)
	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2개월
	사.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로서 위해평가가 끝나기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판매가 금지된 것	2개월
	1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0.6월) : 위생불량 급식업체에 대한 점검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구매계약 체결 시 활용

※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12.2월) : 학교급식조달시스템 이용 학교에 불량 식재료가 유통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으므로 농관원·식약청·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성 제고 대책을 강구할 것

○ 이에 따라, 행안부, 시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미 2014년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식품관계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감사원**에서는 입찰참가제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 마련 방안을 강구*** 요구

※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업체('25년) : 식재료 납품업체 5,471개 중 1.2%인 65개 업체에 대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조치(aT 운영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25년 기준) ※ 65건 중 영업정지 26건,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 11건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19년) : 교육부장관은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강구

○ 이와 관련, **2026. 2. 19. 법률 제21354호**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입찰참가제한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기간, 그 밖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필요

※ (추진경과) 정부입법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23.1.4.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1대 국회), 의원 대표발의('24.8.13.) 후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됨('26.1.29. 공포, 8.20. 시행)

○ 따라서,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벌칙규정 대상 중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위반행위)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에 대하여 **형벌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6개월**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근거 마련**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 업체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중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위반행위(벌칙규정 대상)를 한 학교급식 관련 업체에 한정하여 1개월~6개월 제한

※ 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반영(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제한기한을 타 법률과 같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을 개선권고, '22.11.17.)

○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 **유해 식재료의 납품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보다 **철저한 식재료 관리**를 통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사용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자의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내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과태료 포함)한 경우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현재 법적근거 부재)

규제대안1	대안명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내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과태료 제외)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규제대안2	대안명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중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공급)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내용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모든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모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를 제한하므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성 확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과 관련성이 낮은 위반행위까지 과도한 제한
규제대안1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 관련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합리적인 규제로서,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아이들의 건강보호 기여	-
규제대안2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생·안전관리 준수사항 중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한정하여 규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생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불량업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문제 지속 발생 및 실효성 문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시도교육청 및 학교	2025.10.30.~12.19. 공문으로 의견수렴	별도 의견 없음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26.2월~6월 회의 및 유선 협의	자구수정	반영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	2024.7.29.~8.8.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별도 의견 없음	

	안내		
관계부처	2022.7.22.~8.5. 공문으로 의견조회 (정부입법 추진 시 개정안)	별도 의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과태료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하는 경우(현행유지안),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위반행위(과태료 제외)를 한 업체를 제한하는 경우(대안1), 원산지 표시 위반한 업체만 제안하는 경우(대안2)를 입법취지 및 규제 장·단점 등을 분석한 결과,

- 현행유지안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상의 위반행위를 한 모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를 제한하므로 경각심 제고에는 효과적이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의 폭이 넓게 적용되므로 개정법률에 부합하지 않음
- 대안1의 경우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위반행위 업체에 한정하여 제한하는 합리적인 규제로서, 개정법률에 부합하고,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 대안2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한정하여 규제하여 업체에게 큰 부담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생·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불량업체가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문제 지속 발생 및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3. 규제목표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통해 유해한 식재료의 납품 가능성을 줄이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급식의 안전성 확보

○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 사용으로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현재는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규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위반행위 업체로 규제의 대상을 최소화하여 규정함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약 6천 개) 중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일부 업체(약 40개 업체, '25년 기준)에 대해 1개월~6개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다른 업체에게 경각심 제고 등의 파급효과 및 편익이 많음

○ 또한, 일부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통해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유해한 식재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급식 안전성 확보에도 필요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무관함)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모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자 간 차별성이 없어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공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업종(도매 및 소매업)으로 평균매출액 등이 1,200억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 다만, 동 규제는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한 업체도 중요한 위반행위 업체로 한정하여 최소화하여 규정함

· 아울러 동 규제는 2014년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일부 학교급식 관련 업체에 한정하여 제한하여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고, 식재료 구매 계약에 참여하는 납품(공급) 업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므로 별도 형평성이나 차등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판매/영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유사 입법사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3) 참고
④ 대상 업종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식재료 납품(유통) 업체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 할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기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차등화 적용은 불필요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3에 따라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에 대해 선정취소 또는 과징금 이외에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규모(근로자 수, 매출액 등) 등을 고려한 차등화는 미실시(위반행위만 고려)
⑥ 차등화적용 여부	불필요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학교급식 납품(공급)업체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사항 중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참여자들의 경쟁 유인에 미치는 경향은 거의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제공(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몰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사항 중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 관련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의3에 따라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선정취소 또는 과징금 이외에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70조 등에서 의사결정・입찰・낙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자의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자의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피규제자인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가 이미 동 제도에 대하여 이해 및 준수하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현재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가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 제한하였으나, 제한 업체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위반행위 업체로 한정하는 등 최소화하여 규제를 설정하였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2014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식품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를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인력 및 장비(시스템) 확보없이 가능하므로 행정적 집행에 부담 및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지정정보처리장치의 하나인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므로 재정적 집행에 부담 및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체결 시 위생 불량 급식 업체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필요” 권고 조치

○ 2011년, 국정감사 시에도 「식품위생법」 위반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지적

※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12.2월) : 학교급식조달시스템 이용 학교에 불량 식재료가 유통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으므로 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는 등 안전성 제고 대책 강구

○ 관계기관* 협의('12년~)를 거쳐 2014년부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조치 중**에 있음

* 행정안전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7개 시·도교육청 등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 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 참여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 2019.7월, 감사원*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제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 마련 방안을 강구 요구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19년) : 교육부장관은 국공립학교의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강구

○ 2023.1월, 정부입법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21대 국회),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학교급식법」개정

※ 의원 대표발의('24.8.13.) 후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 ('26.1.29. 공포, 8.20. 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규제 시행 이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유통)업체가 준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개정 「학교급식법」법률에서 위임된 식재료 구매 계약

관련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과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도 정비계획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	–	–	–

4. 종합결론

○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1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아울러, 현재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가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 제한하였으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위반행위 업체로 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등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설정하였음

○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 위해한 식재료의 공급을 차단하고,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급식 안전성 확보 및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자의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하는 것이므로 규제 준수를 전제로 분석하는 경우 규제비용 발생하지 않음 ○ (편익)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업체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유인을 강화하고 적법한 대상만 계약에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자의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 업체
활동제목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비용항목	기타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
근거설명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201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법령과는 별개로,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을 통해 일정기한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재하는 조치 중에 있음 ** 행정처분 등(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 처분)의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 참여 제한/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전 사전판정 단계에서 배제 ※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 11,001개교(or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학교 10,730개교) 중 9,445개교가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25.12월 기준, aT 내부 자료) ○ 다만, 현재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가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두 제한하였으나, 제한 업체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위반행위 업체*로 한정 등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규제로 설정하였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미 등록, 검사기록 미보관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제외하고 위해식품(축산물) 판매, 식중독 검출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경미한 것은 제외)

□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준수 현황

(연도별, 업체수)

구분		‘23	‘24	‘25
식재료 납품업체(b)		5,197	5,274	5,471
입찰참가 자격제한 업체수(a)	원산지 표시 위반	3	3	9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50	61	56
	계	53	64	65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 비율(a/b)		1.0	1.2	1.2

※ 식재료 구매계약은 대부분 월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계약건별(방학 제외 10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비율은 실제 1/10 수준임(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내부자료, ’26.6.15.)

□ 「학교급식법」 제15조의2가 시행되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명문화되므로, 규제시행년도는 2026년임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일반국민(학생) 편익 ○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의 구매계약 참여 제한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업체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유인을 강화하고 적법한 대상만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의 편익이 발생함 □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제한 ○ 2014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에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법령과는 별개로,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

	영)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한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조치 중에 있음 **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확정 처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는 6개월)는 입찰 참여 제한